

종 법(宗法)

득도수계법

제1조 종헌 제11조에 의하여 본종 승려가 되려는 자는 다음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연령 15세 이상인자.
2.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구비한 자
3. 사내에서 24개월 이상 행자 생활을 이수한 자.
4. 불교의 일용의범 및 초심을 이수한 자.

제2조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자는 승려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준금치산자
2. 금고이성의 형을 확정받고 집행유예중인 자.
3. 파렴치범의 전과자로 형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있는 자.
4. 저능아 및 백치
5. 활동할 수 없는 난치병 및 전염병환자
6. 승려의 위신상 품위를 유지하기에 부적합한 신체조건을 가진 자.
단, 불구자 조수행보가 불편하더라도 승려의 본분을 이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예외로 한다.

제3조 1. 승려가 되려는 자는 사승을 정하고 종정이 지정하는 본종공인 계단에서 득도계(사미 사미니계)를 봉수하여야 한다.

2. 사승은 득도사(은사)와 전계사를 말한다.
3. 수계의식은 전례되는 고유 전통 의식에 의하여 삭발염의(본종 소정의 승려복) 범명의 수지 가사정대의 의를 행하여야 한다.
4. 본종은 이법 정한바에 의하여 승려가 되려는 자에게 유발득도수계를 허용할 수 있다.

제4조 유발득도자는 다음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중앙정화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계한다.

1. 연령 25세 이상인 자
2. 학력 불교대학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
3. 종단 공인 교육기관에서 3년 이상 연수한 자
4. 중앙정화위원에서 심사에 합격한 자.

제5조 본종에 처음 승려가 된 자는 총무원에서 정한 일정한 수행과정과 기간을 이수하여야 한다.